

심 사 보 고 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02
----------	-----

2020. 12. 1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11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2월 8일

-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배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과 공동 응모하여 '20. 10. 30일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됨. 장애아동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생애 주기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구 48(청주의료원 內)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 신축규모 : 1,839㎡(건축연면적) 지상4층/지하1층
- 사 업 비 : 72억원(국비 36억원, 지방비 36억원)
- 주요시설 : 외래진료부(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공공재활서비스 관련실, 사회사업실, 처치실, 진료실, 교육실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신청에 선정된 사업으로 충북권에서는 어린이 관련 지속적인 재활 치료환경을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고, 재활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만족할 만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서울 등 외지 원정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이 많았음.
- 어린이 재활은 성인재활과는 달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치료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기관이 필요하며, 초기 장애 발견과 초기대응이 어린이 재활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침.
- 청주의료원내 재활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생애 주기별 재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의료원 소아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능의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60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1월 27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602
----------	-----

제출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과 공동 응모하여 '20. 10. 30일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됨. 장애아동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생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 위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내)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 매입규모 : 1,839㎡(지하1층, 지상4층) ※ 청주의료원 내 증축
- 사업비 : 72억원(국비 36, 도비 36)
- 주요시설 : 외래진료부(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공공재활서비스 관련실, 사회사업실, 처치실, 진료실, 교육실 등

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1,839.09	7,2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청주의료원 부지 내)	1,839.09	7,200,000	2022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증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